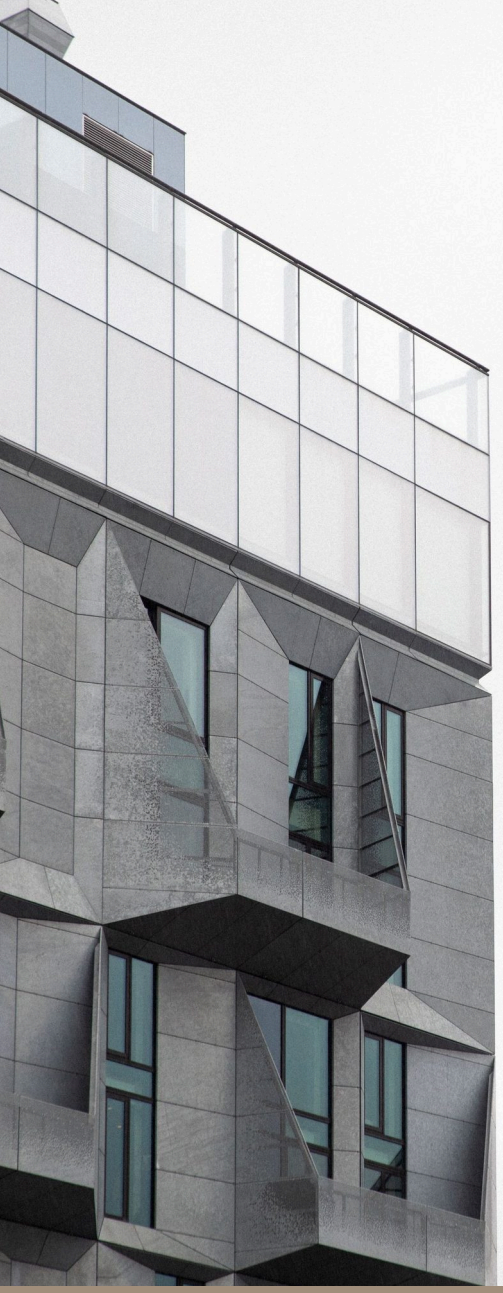

가족법인 설립·운영과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 점검

회계법인 리파인드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지배주주 측이 지분 30% 이상 법인과 거래해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검토 결론

지분 30% 이상 법인이 지배주주 측과 무상·저가·고가·채무 면제 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면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과세합니다(상증령 §34의5⑤). 법인세 상당액은 먼저 뺍니다(같은 조 ④).

과세 성립 조건 4개

1
지분 30% 이상
지배주주등 직접·간접 합산(법 §45의3①, §45의5①)

2
대상 거래
무상·저가·고가·면제는 지배주주 측, 자본거래는 영 §34의5②

3
1억 원 이상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

4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런 분께

- 자녀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대표
- 가족법인에 부동산이나 자금을 넣으려는 분
- 가족법인이 있고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분
- 자녀 법인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오너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지분 진단	주주명부로 지배주주등의 직접·간접 지분을 합산해 3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기업 10%, 그 밖의 법인 3%)도 함께 봅니다.
2 거래 분류	법인과 오갈 재산, 자금, 용역, 증자·감자 같은 자본거래를 모두 적고 유형별로 시가와 대가를 대조합니다.
3 세액 계산	유형별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지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1억 원 기준과 한도(법 §45의5②)를 대조합니다.
4 실행·사후	증빙과 신고기한 일정을 확정하고 실행 뒤에는 가지급금과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을 사업연도마다 점검합니다.



02

거래 구조와 세금 계산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습니다

가족법인은 자녀를 주주로 두고 부모의 자산이나 사업 소득을 법인 안에 쌓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이 법인에 재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넘기면 이익을 보는 쪽은 법인입니다. 다만 세법은 그 이익 가운데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더라도 주주의 증여세는 별도로 따집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이익을 계산할 때 빼고 증여세액 한도에서도 반영합니다.

도해 1.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 흐름

지배주주 측
무상·저가로 재산·자금 제공

→

가족법인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

법인 이익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지배주주등(부모·자녀)
지분율 곱한 이익 1억 원 이상 과세

증여의제이익 = (법인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지배주주등 지분율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무상 제공,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 채무 면제 등을 하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자본거래를 하면(영 §34의5②) 거래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지분율을 곱한 값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금액에 이 이익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최대 1)을 곱해 구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거: 상증법 §45의5①②, §68①, 상증령 §34의5④⑤⑨, 법인세법 §60①

도해 2. 거래 유형별 과세 규정

가족법인의 대표 거래 유형과 판정 기준입니다.

거래	근거 조문	판정 기준과 결과
법인과 지배주주 측 사이의 무상·저가·고가 재산·용역 거래	상증법 §45의5①1·2·3호, 상증령 §34의5⑦⑧	무상 제공은 바로 대상입니다. 유상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법인이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3호도 같습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
금전의 무상 대여·저리 대여	상증령 §34의5⑦, 상증법 §41의4	금전 대부의 이익은 상증법 §41의4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법인 채무의 면제·인수·변제	상증법 §45의5①4호, 상증령 §34의5④·⑥	증여재산가액 또는 법인이 얻는 이익이 특정법인의 이익입니다. 해산 중이고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합니다.
불균등 증자·감자, 합병,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	상증법 §45의5①3의2호, 상증령 §34의5②	신주 발행, 소각, 합병, 현물출자, 전환사채, 배당 포기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영 §34의5②는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적고 지배주주 본인은 적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	소득세법 §101①, 시행령 §167③⑥, 상증법 §35③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입니다.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 시가이면 소득세법 §101①과 상증법 §35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1.1. 시행 개정(법률 제21219호)으로 제1항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배주주 본인이 상대방인 자본거래는 상담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 거래는 당시 문언을 봅니다. 일감 몰아주기(§45의3)는 별도 계산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6개 항목을 거래 전에 대조해 증여의제 대상 여부와 세부담을 가늠합니다

01 지분 30% 이상인가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주식보유비율은 직접·간접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친족입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나눠 줘도 친족 지분은 합산되므로 부모와 자녀의 합이 30%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개정 전 문언 기준).

근거: 상증법 §45의5①, §45의3①, 상증령 §34의5①⑤, 서면-2022-법규재산-4340

02 대가가 시가에 맞는가

무상 제공은 바로 대상입니다. 유상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입니다.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둘 이상이면 평균, 주식 제외), 그것도 없으면 상증법 준용 평가액입니다. 증자·감자와 채무 면제는 도해 2의 열거 유형에 해당할 때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넘기기 전에 시가 근거를 먼저 확정합니다.

근거: 상증령 §34의5②⑥⑦⑧, 법인세법 시행령 §89①②

03 자녀 출자금의 출처

소득이 없는 자녀가 법인에 출자하면 출자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고한 소득, 신고한 증여재산, 재산 처분 대가나 차입금으로 직접 쓴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합니다. 출처를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출자 전에 증여신고 여부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근거: 상증법 §45①③, 상증령 §34①②

04 이익 계산과 1억 원

과세 금액은 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뒤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억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받은 배당을 증여의제 이익에서 빼도록 명문화했지만(영 §34의3⑲) 특정법인에는 그 규정이 없고 배당을 빼지 않은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심사 결정이 있습니다(개정 전 문언 기준).

근거: 상증법 §45의5②, 상증령 §34의5④⑤⑨, §34의3⑲, 심사-증여-2025-0015

05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법인 30%이고, 한계보유비율은 중소·중견기업 10%, 그 밖의 법인 3%입니다. 계산은 중소기업이 50% 초과 비율과 10% 초과 지분, 중견기업이 20% 초과 비율과 5% 초과 지분, 그 밖의 법인이 5% 초과 비율과 지분 전체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비율이 20%를 넘고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어도 대상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근거: 상증법 §45의3①③, 상증령 §34의3⑥⑦⑨⑰

06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 자금을 대표나 가족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세무처리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인이 신고와 함께 선택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으면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합니다.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익금에 산입합니다. 둘째 소득처분입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입니다. 셋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더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⑤, §89③, §106①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④, 법인세법 §28①4호



04

판정 순서와 일정

판정은 6단계이고 신고기한은 법인 결산에 연동됩니다

도해 3. 실행 일정

설립·출자 전
주주명부로 지배주주등 지분을 확정하고 대가와 시가 근거를 갖춥니다.

거래일
거래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법인 이익과 법인세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증여의 제이익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7월 31일입니다.

도해 4. 판정 순서

단계	판정 내용
1. 특정법인인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직접·간접 합산)이 30% 이상이면 다음으로 갑니다. 미만이면 §45의5는 적용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의 한계보유비율을 따로 봅니다.
2. 상대방과 거래 유형	상대방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고(자본거래는 영 §34의5②에 따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무상 제공,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자본거래, 채무 면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으로 갑니다.
3. 현저성 판정	유상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봅니다. 금전 대부는 §41의4를 준용해 계산한 이익으로 봅니다. 무상 제공과 채무 면제는 이 판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4. 이익과 금액 기준	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지분율을 곱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5. 한도 확인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주주에게 별도로 계산합니다. 중소·중견이 아닌 법인은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 초과와 매출액 기준금액 초과도 대상이고 이익 계산식은 규모별로 다릅니다.

보수

보수는 지분 구조, 거래 건수, 법인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견적서로 안내합니다.

견적 전에 주주명부와 거래 예정 목록을 받아 업무 범위를 확정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부모가 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무상·저리 대여는 이자 상당 이익이 생깁니다. 특정법인과의 금전 대부는 상증법 §41의4를 준용해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5⑦). 법인이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증령 §31의4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20억 원을 무상 대여하면 이자 상당 이익은 연 9,200만 원입니다. 1억 원 기준은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지분율을 곱한 증여의제이익에 적용하므로 이보다 작은 금액으로 따집니다. 이자 상당 이익만으로 1억 원을 넘으려면 대여액이 약 21억 7,4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법인세 상당액과 지분율을 반영하면 기준 대여액은 더 커집니다. 1년 이상 대출은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상증법 §41의4②). 약정서에 이율을 적고 이자 수수 기록을 남깁니다.

상증령 §34의5④⑤⑦, §31의4①, 상증세법 시행규칙 §10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상증법 §41의4①②

Q2. 자녀 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의 시가이면 상증법 §35는 적용하지 않고(§35③), 특정법인 증여의제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01①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⑧).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쟁점은 시가 입증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①②). 시가보다 낮게 팔 때는 규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고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저가는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입니다.

상증법 §35③, 소득세법 §101①, 소득세법 시행령 §167③⑥, 상증령 §34의5⑦⑧, 법인세법 시행령 §89①②

Q3. 증여세는 언제 신고할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68①).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법인세법 §60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의 법인이 제출 대상이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0의2①). 상증법 §45의3①은 주식보유비율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 기준으로 정의하고 §45의5도 이를 쓰므로(2026.1.1. 시행) 간접 보유분도 포함해 신고를 준비합니다. 간접 보유 주주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유지한 심판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3-서-10000).

상증법 §68①, §45의3①, §45의5①, 법인세법 §60①, §60의2①, 조심-2023-서-10000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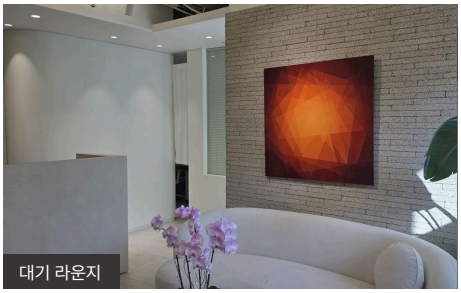
대기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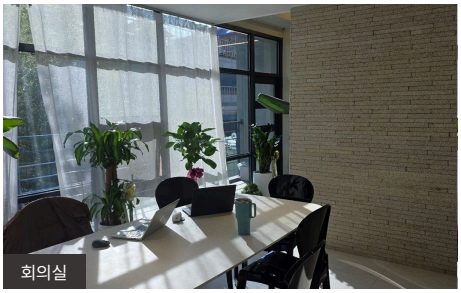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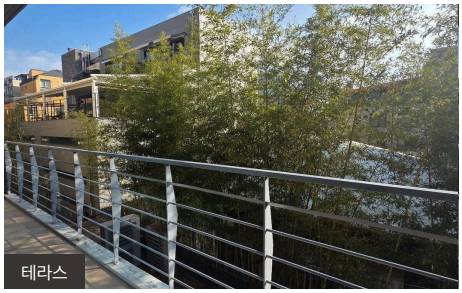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